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재무경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포함〉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9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5.
3. 회부연월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 추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 포함

개정안은 인천대학교의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총장 등) ① ~ ③ (생략)	제8조(총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u>사람을</u>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 <u>사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u> -----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재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인원은 1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평의위원회가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추천하면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¹⁾.

1) 「인천대학교 정관」

- 제9조(총장추천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 외부인사를 포함한다.
 ③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내의 인사(그중 2분의 1 이상은 이사가 아닌 인사로 한다)를 추천하고, 평의위원회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머지 인사를 추천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함.

따라서 법 개정이 되는 경우 학생이 총장후보자를 선임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총장이 학교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므로 학교업무와 운영에도 학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확대한다는 실익이 있음.

2. 평의회 구성 다양화 및 특정 구성원 편중 제한

개정안은 인천대학교 평의회 구성원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평의회) ① (생략)	제15조(평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의회는 <u>국립대학법인 인</u>	② ----- <u>30명 이내의 평</u>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3명의 총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추천할 수 있는 총장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 미만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총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장 임기만료 5개월 전에 구성하여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운영한다.

⑥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총장후보대상자의 모집) ① 총장추천위원회는 공모, 추천, 초빙 등의 방법으로 총장후보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대상자를 초빙하기 위한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총장후보초빙위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9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초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후단 신설></u> ③ ~ ⑥ (생략)	<u>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재 인천대학교 평의원회는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임하는 교원 24명 이내,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원 3명 이내, 직원 대표 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²⁾, 학생을 구성원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의 때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2)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임하는 교원 24명 이내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원 3명 이내
 3. 직원 대표 3명 이내
- ②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 3) 제6조(회의) ⑤ 평의원회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의 평의위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대한 사항, 이사와 감사 선임,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어있는 반면,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⁵⁾에 따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자율성을 인정받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의 상한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천대학교 평의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평의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위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위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인천대학교 정관」

제18조(평의위원회) ① 인천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대학원 또는 학부·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칙, 평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위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는 의장과 부의장에 학생 임원이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학생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는바⁶⁾,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참고로 인천대,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의 평의위원회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별 평의위원회 구성 현황 >

※ (인천대) 교원 90%(27명), 직원 10%(3명)로 구성

구성단위	교원	직원	합계
비율(명)	90%(27명)	10%(3명)	100%(30명)

※ (국립대) 교원 48%, 직원 22%, 조교 8%, 학생 18%, 동문 및 기타 4%로 구성('24.6.1. 기준)

구성단위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및 기타
비율	48%	22%	8%	18%	4%

※ (사립대) 교원 36%, 직원 21%, 조교 6%, 학생 17%, 동문 및 기타 21%로 구성('24.6.1. 기준)

구성단위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동문 및 기타
비율	36%	21%	6%	17%	21%

인천대학교는 직원 및 학생의 참여여부는 대학의 자율적 권한 내에서 대학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 포함

개정안은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위원회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도

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③ 대학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생략)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u>교직원과</u>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u>교직원, 학</u> <u>생 및</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재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위원회는 교직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도록 하면서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경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⁷⁾.

재무경영위원회는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예산·결산,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입학금·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7) 「인천대학교 재무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총장이 지명하는 부총장 1명
2.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예산처장, 연구처장, 대외전략처장, 사무처장, 입학본부장
3.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대학교 교직원 3명(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포함)
4. 동창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5. 총장이 임명하는 인천대학교 교직원 2명
6.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5명
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⁸⁾

재무경영위원회가 임직원의 보수뿐 아니라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므로 학생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 운영에 있어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천대학교 정관」

제23조(재무경영위원회) ①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5. 별도 규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제52조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
 7.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 관련 규정 및 재정적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은 이미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대학 평의회, 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이를 달리 적용할 이유·필요성은 없으므로,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회,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인천대학교는 개정안에서 정하는 사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